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64821 판결 [계약금 반환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24 선고 2023나6482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291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장진훈, 이근옥

피고, 피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배호성, 김규호

변론 종결 2024. 8. 22.

판결 선고 2024. 10. 24.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13. 선고 2022가단5029122 판결

주문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1. 2. 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원고는 계약금 포기 조항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너무 과다하거나 가혹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에 비추어 그 부분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감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2줄, 제4쪽 제2줄 및 제8줄의 각 "G가"를 모두 "H가"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지상목

판사박평균

판사고충정